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숲해설,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116호, 2022. 12. 27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보완(안 제18조 관련 별표 1 개정)

- 1)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인력기준은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

나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보완(안 제19조 관련
별표 2)

- 1) 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’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

다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(안 제19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)

- 1) 연간 매출액,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
- 2)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영업정지 일수와 적정과징률(0.24)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

라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(안 제19조의3)

- 1) 서면통지,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

마.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및 절차 마련(안 제19조의4)

- 1)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를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
- 2)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간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
- 3)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기준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2023. 3. . ~ 5. 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 등 있음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제19조의3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4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(擔保保全)에 필요한 산림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 제2호 마목부터 사목을 사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마목,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법 제21조제1항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4 호의2	등록취소	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

바. 법 제21조제1항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 우	법 제11조 제1항제4 호의2	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정 지
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제3호,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(제18조 관련)

1.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	시설기준	인력기준
1. 산림복지단지	가.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(이하 이 표에서 “자연휴양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(이하 이 표에서 “치유의 숲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나. 각 산림복지시설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	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
2. 자연휴양림	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, 종류 및 설치기준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4에 적합할 것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
3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(이하 이 표에서 “산림욕장”이라 한다)	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적합할 것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
4. 치유의 숲	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, 종류 및 설치기준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적합할 것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
5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 및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

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	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	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
6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
7.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	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	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

비고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2.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

[별표 2의2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9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영업정지 기간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다.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연간 총매출금액(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연간 매출액의 합계를 말한다)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.
- 라.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(90일을 말한다)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- 마.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text{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} \times \text{업무정지 일수} \times 0.24$
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</u> <u>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</u> <u>의 금액은 별표 2의2에 따른 과</u> <u>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</u> <u>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3(과징금의 부과 및 납</u> <u>부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</u> <u>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</u> <u>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</u> <u>류,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</u> <u>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</u> <u>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</u> <u>로 통지해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</u> <u>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</u> <u>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</u> <u>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</u>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</u> <u>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</u> <u>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</u> <u>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</u> <u>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</u> <u>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</u>

<신 설>

증을 발급하고,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4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
2.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

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
예상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
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
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
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
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
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
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
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
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
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
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
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
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
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
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
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
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
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
회 이내로 한다.

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
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
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
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(擔保保全)에 필요한 산림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1841